청렴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사례집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 유의 사항 ★

⁂ 처분의 경우는, 공공기관별 징계양정 및 기준이 다르며, 타사안과 병합되어 처분되는 경우 중 갑질 사례만 발췌하거나 간단히 사안을 요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질여부는 관련법규 당시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합니다.

⁂ 본 사례집은 갑질예방교육을 위한 내부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사례집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일러두기

1. 이 사례집은 2019년 6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갑질 근절 추진방안」에 따라 공공분야 각 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갑질사례를 수집하여 갑질 예방 교육 등 현장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집한 것으로 내부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분야는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포함하였으며, 공공분야는 국무조정실의 공공분야 갑질사례집을 참고하여 공공기관에서의 갑질사례를 포함하였습니다.

3. 갑질 사안 수집 시 공공기관별 갑질내용의 간단히 축약하여 서술하거나, 처분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 중 일부를 수록하였으므로 실제 갑질 여부 판단은 관련 규정이나 지침, 당시 정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피처분자 이름 및 관련 기관(학교)명 등은 삭제(○○○표시)하였으며,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례의 일부를 재구성하고 편집하였기 때문에 실제 지적사례와 다를 수 있습니다.

6. 처분의 경우는 기관별 징계양정 및 기준이 다르며, 타사안과 병합되어 처분되는 경우 중 갑질 사례만 발췌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지침(법규, 제도 등)은 실제 감사 당시 기준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행 지침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사례집

CONTENTS

제1장 개요

1. 개요 ····· 3
2. 갑질의 판단 기준 ····· 3
3. 갑질 사례집 활용 시 참고사항 ····· 4

제2장 유형별 갑질 사례

1. 법령 등 위반 ····· 9
2. 사적이익 요구 ····· 19
3. 부당한 인사 ····· 36
4. 비인격적 대우 ····· 44
5. 기관 이기주의 ····· 67
6. 업무 불이익 ····· 70
7. 부당한 민원응대 ····· 75
8. 기타 ····· 76

부 록

1. 갑질관련 쟁점사항 및 참고자료 ····· 87
2. 국가(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 ····· 89
3. 경기도교육청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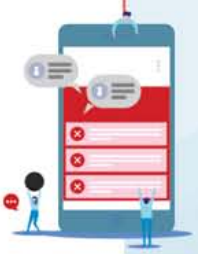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사례집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제 1 장

개요

- 개요
- 갑질 판단 기준
- 갑질 사례집 활용 시 참고사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제1장 개요

1 개요

갑질사례집 제작 목적

- 공공분야에서 발생한 다양한 갑질 사례를 수집하여 실제 갑질의 발생 현황 및 그에 따른 징계 정도 등을 확인하고,
-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함으로써 갑질에 대한 판단 기준 제공과 갑질 예방 교육을 목적으로 함

갑질사례 수집 및 분류유형

- 갑질사례 수집
  -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산하기관 등(공공부문)
  - 기간 : 2018. 7월부터 2021. 9월까지 발생한 사례

2 갑질 판단 기준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함

판단 기준

-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갑질 유형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 기준(8개)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 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 하였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 시켰는지 여부
- **(기타)**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 강요, 부당한 차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 출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9.2

3 갑질 사례집 활용 시 참고사항

- 본 사례집은 수집한 갑질 사례를 갑질 유형별로 일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음
- 각 사례는 해당 기관에서 작성한 내용을 최대한 인용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독해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였음
- 처분과 관련하여, 타사안과 병합되어 처분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후의 사정변경(행정소송 결과 처분 변경 등)이 있어 처분 등이 달라진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람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사례집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제 2 장

유형별 갑질 사례

- 법령 등 위반
- 사적이익 요구
- 부당한 인사
- 비인격적 대우
- 기관 이기주의
- 업무 불이익
- 부당한 민원응대
- 기타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제2장 유형별 갑질 사례

1 법령 등 위반

[법령 등 위반] 유형

- **[판단 기준]**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법령 위반]**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정인 또는 특정 사업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
- **[내부규정 부당변경]**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내부 규정을 변경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 사업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준수해야 함

예시

- 기관장이 인사담당자에게 특정인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여 특정인이 승진되도록 하는 행위
- 계약담당자가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내부평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당사업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행위
- 구매담당자가 특정사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가 ▸ 교육분야 ****

사례 1

교장 A는

- 학교 축제, 행사의 수익금을 횡령하고,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사도록 교직원에게 강요하여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함.
- 배우자가 학교 내 스크린 골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지시하고, 카드 결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바꿔서 상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지시함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중징계](갑질 행위 외 타 행위 포함)

사례 2

실장 A는

- 직원들을 상대로 A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게 하기위해 근무상황부를 미리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수당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 직원들에게 前 기관장의 연대채무보증금 ㅇㅇ만원을 부담하게 한 후 이에 따른 개인 손해액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였으며,
- 영양사에게 급식용 쌀과 반찬을 가져오게 하여 이를 취득(횡령) 하였음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처분 [해임 및 형사 고발 조치]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3

교수 A는

- 학사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총장 승인없이 수업일을 변경하고,
- 조교에게 개인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 담당교과목 시간에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또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특정 학생을 비난하였음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처분 [감봉 2월]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4

교수 A는

- 논문 지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인의 논문을 표절하였고, 학회를 설립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자격증을 발급하였으며, 학회 행사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학교에 시설을 설치하고 부인의 가짜 경력을 만들어 자격시험에 응시하는데 사용하였고, 용역을 얻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하였으며 학부생 수업 시 대학원생으로 수업을 대체하였음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정직]

사례 5

교장 A는

- 강사 채용 시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결과변경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누리과정 간식을 검식 명목으로 요구 후, 검식일지 미작성
-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하고 과도한 구두 결재 강요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결재 반려, 특별한 사유 없이 교직원이 신청하는 연수를 포기하도록 강요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징계]

사례 6

교장 A는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관련 없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토록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
- 결정된 학생수련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도록 강권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
- 학교 공용물품을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검식용 우유를 취식하는 등 공용물의 사적사용
- 강사 선정 시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부적절한 발언과 본인 복무처리의 부적정 처리
-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처리 부적정, 사후조치 미흡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처분 [해임]

사례 7

교장 A는

- 직원들에게 일상적인 반말과 고압적·일방적 업무지시로 불쾌감 조성 및 직원 반발 야기
- 복무 등과 관련하여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고,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복무사유에 해당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수를 제외하여 실시할 수 있음에도 종합적인 고려없이 복무신청에 대해 질책하는 등 지도·감독 권한을 일탈함

유형 [법령 등 위반]

처분 [징계]

사례 8

과장 A는

- 직원에게·성희롱(육체적 및 언어적 성희롱), 선물세트 요구, 복무위반(코로나19 비상근무 중 음주, 출장 중 근무지 이탈), 회계 집행 부적정(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직원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금품수수]

처분 [해임]

사례 9

부장 A는

- ○○부장이 일부 교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직원들이 복무를 사용함에 있어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함
- 부장이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으로 일부 교직원들이 정당한 복무 권한을 행사하는데 부담감을 주었으며
- 폭언 등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 유지의 의무 및 친절·공정의 의무를 소홀히 함

유형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경고]

사례 10

행정실장 A는

- 소속직원의 모성보호 시간 사용 제한 요구, 대리 결재 지시, 신고 후 위협적인 전화

유형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경고]

사례 11

교장 A는

-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모욕적 언행을 하고 책상을 치며 강압적 분위기를 형성("인사부터가 제대로 못하는 데 뭐를 제대로 하겠어~")
- ○○설문 과정에서 설문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본인과 관련있는 사항의 결과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할 것을 지시함
- 본인 발령 전에 사전방문 오지 않았다고 질책하고, 취임식을 요구함
-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표창 명단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추천할 것을 지시한 후 주위에서 만류하자 이를 질책함
- ○○평가와 관련하여 교장의 뜻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담당자를 모욕· 질책하고 폭행함 ("한번 해보자는 거 같은데 한번 해보자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따지고 들거야?")
- 근무평정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협박성 발언을 하고 학교예산으로 노트북을 구입한 후 집으로 가져가 개인용도로 사용함

유형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처분 [견책]

사례 12

교장 A는

- 병가 사용 후 출근한 교사에게 인격비하 발언을 하고 직원들의 복무(연가·병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함
- 소속 교직원에게 본인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습을 받게 함
- ○○고사 답안지 성적 처리와 관련해 담당 교사에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반하는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함

유형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처분 [감봉 1월]

사례 13

교장 A는

- 수업 중인 교사 등을 관사로 불러내어 음주를 권하였으며, 수학여행 중 학생 취침지도 후 교사 등을 불러내어 음주를 권함
- 친목여행 및 회식 중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함("운전이나 해, 이 ○○야!")

유형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처분 [해임]

사례 14

교장 A는

- 학업성적 관리 부적정(학업성적 평가 세부기준 미수립,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최종 심의 없이 이수처리 강요 등)
- 용역계약 업무 관리 감독 의무 소홀

유형 [법령 등 위반]

처분 [경고]

사례 15

행정실장 A는

- 용역계약 업무 부적정(입찰 공고 부적정)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흡연구역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지속적 흡연을 하여 직원들의 불쾌감 유발 및 건강에 위해를 가함

유형 [법령 등 위반]

처분 [주의]

사례 16

과장 A는

- 소속 직원(계약담당자)에게 공사(용역) 계약 시 특정 업체 소개 및 계약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관내 학교의 계약담당자에게 업체 소개하는 등 지위를 직접 이용한 이권에 개입함

유형 [법령 등 위반]

처분 [중징계]

나 ▸ 공공분야 ****

사례 1

기관장 A는
- 직원에게 관리자 전용주차 공간을 지정·운영토록 하고,
- 인격 모독성 발언과 과도한 질책 및 비난을 하였으며,
- 물품 구입 시 선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담당 직원에게 특정물품을 선정하도록 지시하였음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처분 [감봉 2월]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2

과장 A는
-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에 A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터넷 강의 리포트 작성, 시험문제풀이를 하게 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음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정직 1월] 부정 취득한 자격증 취소요청

사례 3

부서장 A는
- 사업 수행기관에서 구입하는 기념품 품목·수량·가격 등의 결정에 개입하여 특정업체에서 기념품을 구매토록 하고, 그 기념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음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처분 [견책]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4

담당자 A는

-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을 외부에서 개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케 하고
- 해당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보호자로부터 4회에 걸쳐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았음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정직 3월]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5

과장 A는

- 잦은 업무분장을 실시하면서 특정직원들에 대해 징벌성 인사(짧은 기간 동안 잦은 업무 변경, 하급자를 팀장으로 선임)를 단행하고
- 업무 설명회 자료 담당 직원에게 A의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소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해당 업체의 견적서를 전달하는 등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하였음

유형 [부당한 인사], [업무상 불이익], [법령 등 위반]

처분 [경징계 요구]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6

실장 A는

- 함께 저녁을 먹은 직원 중 특정직원을 지명하여 식사 비용을 계산하게 하고, 다음날 야근 중인 그 직원을 불러내어 술값과 택시비를 요구하였으며
- 담당직원에게 업무추진비를 실제 사용 내용과 다르게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였음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정직 1월] 직원 대상 사례 전파

사례 7

과장 A는

- 담당직원에게 A의 자녀가 대상자가 아님에도 ○○청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시하였음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처분 [감봉(소청심사 결과 불문경고)]

2 사적 이익 요구

[사적 이익 요구] 유형

- **[판단 기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강요·유도 여부, 사적 이익 추구 여부
- **[금품수수 등]**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됨
- **[사익추구]**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예시

- 기관장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자녀 영어숙제, 개인이 필요한 자료수집, 세차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
- 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 생일행사 등 사적인 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사적으로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행위
- 기관장이 개인 모임 장소에 직원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는 행위
- 상급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자신의 조상묘 벌초를 시키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김장과 이삿짐 옮기기 등 사적인 작업을 시키는 행위
- 직원과 술을 먹으면서 자신이 술값을 계산한 후 부하 직원에게 본인의 은행계좌번호를 주며 술값 전부를 송금 요구하고 입금 받는 행위
- 술자리 회식 후 상급자의 대리 운전비를 지속적으로 대납한 행위
- 학교 거래업체에 견적서를 부풀려 계약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은 행위
- ○○부장이 추석 전에 교내 메신저를 통해 교장과 교감의 주소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명절선물을 수수한 행위

예시

- 업무와 무관한 교장 소유 과수원 전정 작업 등의 업무를 직원에게 시킨 행위
- 자신의 전원주택 가꾸기에 소속 직원을 동원한 행위
- 기간제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차량 기사를 하도록 요구한 행위
- 직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관사 청소를 지속적으로 강요한 행위
- 지속적으로 직원에게 점심 식사를 미리 준비하여 식당 자리를 잡아 놓도록 지시한 행위
-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본인의 은행 심부름을 시킨 행위
- 학교 소모품(주소 라벨지 등)을 사용하여 직원에게 자녀 결혼식 청첩장 발송 주소 편집과 인쇄를 하도록 지시한 행위
- 매주 특정요일 외부인들과 개인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청소, 차 준비 등 사적인 업무를 직원에게 강요한 행위
- 신규교사에게 관리자 본인의 사적인 과제를 대신하도록 강요한 행위

가 ▸ 교육분야 ****

사례 1

영양사 A는

- 아침 조회시 조리종사원들을 약 1시간 동안 세워놓고 특정 조리사원에 대해 지적, 비난 등을 하고, 음식이 타거나 배식이 잘못되었다거나 검식용 음식을 조금 가지고 왔다는 등의 이유로 음식이나 젓가락을 바닥에 집어던졌으며,
- 조리종사원에게 A의 자녀를 위해 점심식사를 차리도록 하고, A의 업무인 식자재 재고 검수, 급식일지 작성을 대신하게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정직 3월] 영양사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2

교수 A는

- 지도학생들과 면담 또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폭언 및 욕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등을 수시로 하고,
- 지도학생과 연구원에게 해외출장 기간 중 A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으며,
- 지도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도학생에게 지도교수를 다른 교수로 변경하도록 폭언 및 강요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기타]

처분 [감봉 1월] 교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3

원장 A는

- 교직원들을 상대로 교무실 등에서 “니가 원장이야?”, “다들 그러고도 월급받아?”, “너 감점이야!” 라는 등 고함을 치고, 결재판을 내려치거나 서류를 집어던지고,
- 기간제교사를 상대로 A의 관사에서 가져온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하였으며,
- 퇴근 이후 담당교사 등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에 나와 보고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담당교사 등이 야근을 하도록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업무상 불이익]

처분 [감봉 3월] 기관장 등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4

교수 A는

- 학생을 상대로 논문 지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 지도하는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A가 하여야 하는 수업을 대신하게 하였으며, 학회 행사와 용역 수주를 위해 학생들을 동원하였음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중징계] 교직원 대상 갑질근절 교육 실시

사례 5

교장 A는

- 돌봄교실 교육비 등에서 구입한 학생 간식을 검식한다는 명목으로 간식을 제공 받고, 학교에서 구입한 화첩·그림붓·파레트 등의 교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추구함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중징계]

사례 6

본부장 A는

- 본부장 등이 근무시간 중에 본인의 사무실 등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할 차, 음식 등을 주문하여 배달시키는 등 횡포를 일삼아 일부 직원들이 퇴사함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처분 [견책]

사례 7

교장 A는

- 본인 식판의 잔반처리 등을 직원에게 요구하는 등의 사적노무금지 위반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처분 [불문경고]

사례 8

교장 A는

-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였으며, 독점적으로 교내 과실수 열매를 취득함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주의]

사례 9

원장 A는
- 간식을 원장실에 가져오게 하여 취식
- 육아휴직 사용 교사에게 폭언 등

유형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처분 [정직 1월]

사례 10

교장 A는
- 행정실장에게 출근길에 차를 태워줄 것을 요구
- 부모 입원을 위해 조퇴하는 교사의 조퇴를 불허함
- 소속직원들에게 회식 참여를 반복적으로 강요함

유형 [사적 이익 요구], [법령등 위반], [기타]

처분 [견책]

사례 11

원장 A는
- 시설관리직에게 자택 천장수리 지시, 부당 인사 업무 처리 지시, 허위진술 요구 등

유형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기타]

처분 [감봉2월]

사례 12

교사 A는

- 기간제교사에게 근무시간에 본인 자녀의 간식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
- 본인 동의없이 팀회비를 관리하는 총무로 위임하고 출근길에 간식거리(빵,우유, 라면 등)을 사오도록 근무시간이 아닌 시각에 반복적으로 요구함.

유형 [사적 이익 요구], [기타]

처분 [견책]

사례 13

교장 A는

- 개인 연주회 개최 사실을 직원에게 홍보 및 참여 강요
- 근무시간 내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와 무관한 침술 행위로 근무기강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발생시킴
- 학교업무 추진과정에서 회의 중 고성 및 모욕적 언행을 하고, 복무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복무 승인 과정에서 교직원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과 제한을 행사함으로써 비인격적 대우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함

유형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견책]

사례 14

교장 A는

- 소속직원에게 전보내신서 제출을 강요, 교장실 청소를 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
- 갑질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지 묻고 답변할 것을 수차례 종용
- 근무성적평정 지침을 언급하여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근무성적평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사유로 불필요한 업무를 종용
- 회의록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발언 일부를 수정하도록 지시

유형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인사상 불이익], [기타]

처분 [경징계]

사례 15

조리사 A는

- 자신보다 업무경력과 신분상 지위가 낮은 조리실무사들에게 "병가를 사용하려면 간식을 사와야 한다"고 말하거나,
- 가족의 세탁물(티셔츠, 운동화 등)을 학교로 가져와 급식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여 세탁·건조하고, 근무시간 중 머리염색(뿌리염색)을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사적이익 요구]

처분 [불문경고]

사례 16

교장 A는

- 교장이 담당교사에게 부당한 절차로 교장 자녀의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허락해주라고 강요함
- 교장의 원격연수를 교사에게 대신하도록 지시함

유형 [법령위반], [사적이익 요구]

처분 [견책] 타사안과 병합

나 ▸ 공공분야 ****

사례 1

팀장 A는

▸ 같은 팀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을 상대로 A의 자녀 대입전형 조사, 가전제품 A/S 예약 등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지시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징계위원회 회부]

사례 2

부서장 A는

▸ 직원을 상대로 A의 구두수선 심부름, 자녀의 입학 관련 사무 등 가족의 개인업무, 가전제품 수리, A의 점심 도시락 구입 등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수차례 지시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처분 [근신 10일]

사례 3

부서장 A는

▸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자가에서 휴식 중이던 부서원에게 "술을 마셨는데 태우러 오라"고 하여 A의 차를 대리운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수차례 지시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처분 [근신 7일]

사례 4

과장 A는

- 업무지시에 대해 직원이 의견을 제시하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윽박지르고, 업무지시를 이유로 고성을 지르거나 사소한 일에도 질책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 직원에게 A가 참여해야 하는 교육에 대한 대리 서명을 지시하였으며,
-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단체와의 저녁식사에 참석하라거나 보건휴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기타]

처분 [정직 1월] 피해자들과의 격리조치, 간부 공무원 재발방지교육 시행

사례 5

과장 A는

- 회식장소까지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였으나, 직원이 보고하지 않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고,
- 평소에도 술자리에서 직원에게 담배 심부름을 지시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경징계] 피신고인과 즉각적인 분리조치

사례 6

직원 3명은

- 사회복무요원을 상대로 개인적인 은행사무, 물건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수 차례 지시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주의] 해당기관장에게 관리감독 철저 및 직원교육 실시

사례 7

팀장 A는

- 직원에게 A의 병원진료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격을 비하하는 언행을 하고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처분 [정직 3월]

사례 8

부서장 A는

- 여러 부서 직원이 모여 있는 근무지 승강기에서 특정직원의 신체를 빗대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 공무 국외출장 중인 직원에게 면세담배를 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서를 수차례 수정·반려하여 담당직원이 사업진행에 차질을 염려해 불면증,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심리검사 결과 '심각단계'를 통보받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기타]

처분 [감봉 3월]

사례 9

직원 A는

- 자회사 운전원을 상대로 그 업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 자회사 운전원에게 A가 담당하는 차량운행기록 확인업무 등을 대신하도록 지시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처분 [견책]

사례 10

팀장 A는

- 하급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 인격비하 발언 등을 하였고
- 공과금 대납, 개인물품 구매 대행, 온라인교육 대리수강 등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지시하였으며,
- 업무시간 외에 저녁식사 자리에 여직원을 불러내어 성희롱 발언을 하고 휴일에도 연락하여 폭언을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기타], [성희롱]

처분 [파면]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11

해외지사장 A는

- 현지인 직원에게 지인 자녀의 현지 유학과 관련하여 후견인이 되어줄 것과 공항 픽업이나 유학에 필요한 서류 조사 등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지시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처분 [경고 및 조기 귀임 조치]

사례 12

부서장 A는

- 직원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빙자하여 A의 모친이 관리하는 축사의 청소 및 주변 환경을 정리하게 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처분 [감봉] 임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13

과장 A는

-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및 욕설, 회유·협박 등을 하여 일부직원이 퇴사하기에 이르렀고,
-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지시하거나 술자리 참석을 요구하였으며,
- A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신고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에 이르자 이를 막기 위해 직원들을 수차례 회유하여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기타]

처분 [파면] 임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14

부서장 A는

- 출장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에게 A의 출장을 수행하도록 하여 교통편의를 제공받았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주의]

사례 15

선임직원 A는

- A의 거주지 이사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이삿짐을 운반하게 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처분 [견책]

사례 16

팀장 A는

- 약 2년간 출퇴근 시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처분 [감봉 1월]

사례 17

부서장 A는

- A의 거주지 이사를 한 후 조원들에게 이삿짐 청소를 시키고, 집에 있는 짐을 가져다달라고 하는 등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지시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처분 [경고]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18

부장 A는

- 직원들에게 '부서회비' 명목으로 금전을 갹출하도록 하여 사용내역을 통제하면서 사적으로도 사용하고,
- 업무시간 중 A의 아들 이사를 돕게 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시하였으며,
- 직원들에게 폭언·욕설을 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처분 [해임]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19

팀장 A는

- 직원에게 A가 사용하는 차량 관리업무(세차, 주유, 정비, 대리운전 등), 주말 산행 참석, A가 다니는 교회 행사 참석 등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 직원들에게 회식비 및 야근 식사비 충당을 이유로 금품을 징수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기타]

처분 [해임(다른 징계사유와 함께 처분)] 임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20

부서장 A는

- 직원에게 근무시간 중 A를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였고 A의 의류를 구입하게 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시하고,
- 직원에게 공용 부식 이외의 식료품을 구입하도록 지시하여 개인적으로 취식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법령 등 위반]

처분 [감봉 1월] 인사발령

사례 21

부서장 A는

- 회식중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직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업무처리 미숙 등을 이유로 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하였으며,
- 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없이 많은 돈을 빌렸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법령 등 위반]

처분 [정직 2월] 인사발령

사례 22

부서장 A는

- 직원을 상대로 A가 운행하는 차량의 세차 및 주유, 개인용품 구매 등 업무와 관련없는 일 또는 A가 해야 할 보고서 작성, 사이버교육 수강 등을 대신하도록 수차례 지시하였고,
- 직원들에게 부당한 휴무일 전원출근 등을 지시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업무상 불이익]

처분 [감봉 1월] 인사발령

사례 23

부서장 A는

- 직원을 상대로 A의 낚시용품을 사두라거나 개인 빨래를 걷어 놓으라고 한 후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았다고 호통을 치고, "대○리를 깨버린다" 등의 폭언을 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견책] 인사발령

사례 24

부서장 A는

- 직원을 상대로 "멍청한 ○끼 같다", "나사 빠진 ○끼처럼 입 벌리고 있지마라." 등의 폭언을 하고, 커피 심부름 등을 시켰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정직 1월] 인사발령

사례 25

부서장 A는

- 직원들을 상대로 A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자재를 옮기게 하고, 전일 숙취로 A가 변기에 구토한 것을 청소하라고 지시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정직 1월] 인사발령

사례 26

해외지사장 A는

- 해외 현지인 직원을 상대로 반드시 'Yes, Sir'라는 표현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이를 어겨 'OK'라고 답변할 경우 고성으로 채근하고,
- 영어에 능통한 현지인 직원과 대화하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화가 나면 무례한 태도로 짜증내며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 A의 개인여행을 위해 출장복귀 일정을 주말로 변경하였음에도 운전원으로 하여금 공항에 마중 나오게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정직 3월] 기관 내 사례전파

사례 27

선임직원 A는

-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A가 작성하여야 할 보고서를 대신 작성하게 하고,
- 장애인 직원을 상대로 폭언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상대로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등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지시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강등] 임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3 부당한 인사

[부당한 인사] 유형의 판단 기준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한 유·불리한 업무 지시 여부

- **[승진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임의로 성과평가 서열을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승진자를 사전에 내정하여서는 아니됨
- **[채용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감독권한이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채용을 강요 또는 유도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기준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 **[퇴직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등 고용관계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예시

- 기관장이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승진자를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시키는 행위
- 기관장이 학교후배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을 조작하여 상위 보직으로 승진시키는 행위
- 기관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의 조카를 인턴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지시받은 인사담당자가 해당자의 면접점수를 높게 조작하여 채용시키는 행위
- 기관장이 면접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부탁받은 응시자의 이름에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여 해당자가 탈락 대상자임에도 합격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 구매담당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자녀 취업을 요구하여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녀를 채용하게 하는 행위
- 직원 채용공고 시 해당분야 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공고하였음에도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기관장의 지인을 합격자로 선정하는 행위
-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3배에서 5배로 늘려 탈락대상자인 지인이 채용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인사 부서장이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절차 없이 하급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해당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 교장이 교사들에게 사내연애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고 이를 어기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예시

- 기관장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선정 시, 특정인을 선정시키기 위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 기관장이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전보희망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교사에 대하여 전보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자가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공고 시 임신 및 출산을 사유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행위
- 기관장이 특정 방과 후 위탁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 상향을 지시하는 행위
- 인사 부서장이 재계약이나 평가를 이유로 “내가 점수 주는 거 알지?” 등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며 사적인 업무 지시하는 행위
- 인사 부서장이 재계약 또는 재채용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가 ▸ 교육분야 ****

사례 1

팀장 A는

- 특정 하급자의 근무평정을 고려하여 전보 내신 의사가 없는 다른 하급자에게 전보내신을 강요함

유형 [부당한 인사]

처분 [견책]

사례 2

원장 A는

- 평정 확인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다면평가자가 평가 서열을 변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함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과 S등급이나 포상을 받은 교원들에게 간식제공을 요구
- 직원에게 성적 묘사와 젊은 남자가 커피 타줘서 맛있다'라고 하여 상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

유형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처분 [경징계]

사례 3

교감 A는

- ○○계획 관련 가산점 대상자 명단에 본인이 포함되도록 부당하게 지시함
- 본인 고유의 업무를 다른 교직원에게 전가함
- 본인의 택배물품이 배달된 사실을 늦게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유형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법령 등 위반]

처분 [경고]

사례 4

교감 A는

- 정기전보 인사와 관련하여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전보내신서 작성을 강요함
- 교사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모욕적 발언을 함
- 회식자리에서 교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남녀 서로 술을 따르게 함

유형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경고]

사례 5

교장 A는

- 특정 교사의 다면평가 점수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있음.
- 학교장 배우자가 출입통제구역인 당직실을 사적으로 출입하게 함

유형 [부당한 인사], [법령등위반]

처분 [경고]

나 ▸ 공공분야 ****

사례 1

주임 A는

-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퇴사하라고 하면서 해당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공식화하려 하고, 다른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에도 부정적인 언행을 보였으며,
-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A의 사적인 외부 강의를 위한 시험지 채점 및 논문 작성 등을 대신하도록 지시함

유형 [부당한 인사],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정직 3월] 직원 대상 사례 전파 및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2

전문경력관 A는

- 유급강사에게 "나하고 친해야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아니면 도중에라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수시로 하였음

유형 [부당한 인사]

처분 [감봉 1월]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3

과장 A는

- 공무직 근로자 B에게 병가를 낸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 기간제 근로자 C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연가를 불승인하며,
- 근로자 D에게 계약과 달리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 위와 같은 근로자들에게 근무 중 욕설, 인격모독, 강압적 행동을 수시로 함

유형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처분 [해임]

사례 4

직원 A는

- 프리랜서에게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발언을 수차례 하였음

유형 [부당한 인사]

처분 [감봉 1월] A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이수

사례 5

실장 A는

- 인턴사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옷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였음

유형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처분 [해임] 해당 기관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보직자 워크숍 실시 및 서약 추진

사례 6

용역담당 A는 용역회사 직원을 상대로

- A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출퇴근 시간 확인대장인 근무일지를 결재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일 같이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 업무 관련 금품 분실 시 용역회사 직원의 조끼, 개인용 가방, 서랍 등을 살펴보아 불쾌감을 유발하고, "깡패냐", "내가 갑이고 ○○선생이 을이니까" 등의 발언을 하였음

유형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감봉 3월(행정소송 중)]

사례 7

기관장 A는

- 직원을 상대로 업무 미흡 등의 사유로 심한 질책과 폭력을 행사하고,
- A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직원을 기피 부서로 발령을 냈으며,
- 담당직원을 상대로 특정업체, 특정공법 또는 특정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지시가 미이행되자 폭언 등을 반복하였음

유형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법령 등 위반]

처분 [중징계 요구]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8

부서장 A는

- 직원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욕설과 험담을 하고, 사무실에서 화가나면 큰소리를 내거나, 책상을 쿵쿵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고,
- 다른 팀에 파견 중인 직원이 부서 회의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단체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른 부서로 보낸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 시급하지 않은 업무를 업무 시간 외에 여러 차례 지시하였음

유형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업무상 불이익]

처분 [감봉 1월] 내부 업무망 게시판에 사례 전파

사례 9

기관장 A는

- 담당직원에게 A가 발령받기 전에 완료된 직원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특정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하향 변경하도록 지시함

유형 [부당한 인사]

처분 [중징계 요구]

사례 10

부서장 A는

- 직원을 상대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방으로 보내버린다"는 등 인사와 관련한 발언을 수시로 하고,
- 사소한 이유로 사유서, 각오의 글을 작성하게 하거나 직원들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였으며,
- 정당한 연가사유에 해당됨에도 연가 사용 시 심리적 압박감을 줌

유형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견책]

4 비인격적 대우

[비인격적 대우] 유형의 판단 기준

- **[판단 기준]** 외모와 신체, 출신지, 학력 등을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 여부
- **[인격비하 및 모욕적 언행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하급자 등의 인격이나 외모・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됨

예시

- 입고다니는 옷을 지적하며 "싼티가 난다",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돈을 써야한다"는 등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 행위
- 하급자에게 "돌○가리냐? 내 입에 거품을 물고 큰소리 내야 돌아 가냐"라고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 하급자에게 "밥 먹여주고 ○○싸게 하고 배부를 만큼 밥 먹여주니 지들 맘대로 해"라고 모욕적으로 발언하는 행위
- 인턴 직원에게 "능력도 없는데 능력 있는 척 하지마라", "다른 직장 갈 수도 없잖아" 등 모욕적 언행을 하는 행위
- 직원에게 "다 뛰어들어 와, 이○○야" "이렇게 일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들아, 오늘 출근 안 한 것으로 해버려?" 등의 폭언을 하는 행위
- 교장이 직원에게 "능력부족이다. 그만 둬라. 바로 서 이 ○○야.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등의 폭언을 함
- 교직원에게 "어디서 이 딴게 들어 왔냐"며, 동물에 비유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함
- "너희는 수업(업무)도 없는데 뭐하냐?", "비정규직이라 정규직 보다 일 못한다", "노는 날만 잘 챙긴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
- 순회학교에 "○○강사, ○○강사 없애버리라고 할꺼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

예시

- 인력 재배치 공문에 소속 직원에 대해 '반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
- 회식 자리에서 특정 여직원들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관리자의 옆 자리에 앉기를 강요하는 행위
- 여교사에게 "바지보다 치마를 입어라", "예쁜 옷을 입어야 한다.", "다리가 예쁘다." 등의 말을 하는 행위
- 다수의 여직원이 있는 회식 장소에서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 "다른 학교도 지원해 봐라. 얼굴이 이뻐서 뽑힐꺼다....얼굴은 1등" 등의 모욕적인 발언하는 행위
- 대화 중 손목을 잡거나 "방학 때 둘이서 놀러가자" 등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 SNS, 휴대전화를 통해 성적 · 모욕적 발언을 한 행위

가 ▸ 교육분야 ****

사례 1

교사 A는

- 교육실무사에게 환경미화와 관련하여 본인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지시한 일을 못하고 있으면 재촉하며 인격 비하발언을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중징계(다른 징계사유와 함께 처분)]

사례 2

영양사 A는

- 조리사와 조리원에게 급식실 운영과 위생교육을 이유로 잦은 고성 등 과잉 감정 표출과 인격모독 등의 장기간 지속적인 언어폭력, 기물파손으로 급식실 내 불안감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킴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정직 1월]

사례 3

교감 A는

- 소속교사의 직무수행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와 지도라는 명목으로 인격모독의 폭언과 반말을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경고(갑질 행위 외 타 행위 포함)]

사례 4

교무부장 A는

- 일부 교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직원들이 연가 등 복무를 사용할 때도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일으키는 발언을 통해 피해를 발생시킴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경고]

사례 5

원장 A는

- 행사, 교육과정 등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였고, 교사에게 인격 모독성 폭언을 하였으며, 부당업무 지시 및 과도한 복무 통제를 하여 교직원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킴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경고]

사례 6

교장A는

- 교직원 친목 여행 중 교직원들에게 욕설·폭언·폭행을 하였으며, 학교 회식 후 이동 중인 소속 교사의 차 안에서 교사에게 폭언·욕설·폭행을 함으로써 교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해임(갑질 행위 외 타 행위 포함)]

사례 7

사무관 A는

- 직원들에게 폭언, 인격비하 발언을 하고 하급직원의 몸 앞부분을 밀쳤으며 직장 내 따돌림을 조장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불문경고]

사례 8

교수 A는

-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유학생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인격 모독성 언행을 함.
- 조교에게 본인의 업무 처리를 부당 지시하는 과정에서 인격적 무시 및 비하 발언을 하여 모욕감을 주고,
- 직원의 사소한 업무실수에도 흥분하여 폭언을 하는 등 행위를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해임]

사례 9

팀장A는

- 팀원들에게 직급차별 및 인격무시 발언, 외모 지적 및 비하 발언, 타부서 직원에게 소속 직원 험담, 싫다고 표현한 음식 강요 등 인권침해를 가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경고] 전보조치

사례 10

교수 A는

- 의학과 교수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성실하게 병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갑질, 폭언, 폭행 및 권위적인 행동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원내 불안감 조성 등 교직원들의 활력을 저하시킴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정직 3월]

사례 11

교장 A는

-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하였으며, 2~3시간 지속된 훈계 및 추궁한 사실이 있음
- 소속직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강요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견책]

사례 12

부장 A는

- 비인격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한 행위가 있음
- 평소 수시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위계질서·지휘체계만을 강조하여, 토의 · 토론 시에도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등 권한을 넘어선 비민주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게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견책]

사례 13

교장 A는

- 교육실무원, 행정실 업무에 대해 강압적 지시, 퇴근 후 주말 저녁 2~3시경 즉흥적 카톡 업무지시,
- 행정실장에 대한 호통, 험담 등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법령 등 위반]

처분 [견책]

사례 14

교장 A는

- 성희롱 발언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직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처분 [경징계]

사례 15

교장 A는

- 소속직원에게 인격 비하 및 모욕적 언행을 하였으며, 특수교사를 비하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견책]

사례 16

원장 A는

- 족구 및 교직원 합창 참여를 부당하게 지속 강제적 요구
- 신체 비하 발언 등 비인격적 언행
- 정당한 복무신청 사유에 해당되고, 담당 업무의 처리에 긴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무 사용 관련 수시로 심리적 부담감 제공
- 교사 다면평가 업무 관련 부당 개입, 기타 부적절한 언행을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인사 불이익]

처분 [감봉]

사례 17

장학사 A는

- 본인업무를 하급자에게 전가한 후 결과물을 본인 명의로 기안문 작성하여 결재받음
- 반복적으로 하급자를 퇴근 못하게 하고, 여러사람에게 큰 소리로 윽박지름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견책]

사례 18

교장 A는

-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교직원 비하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함
- 사적 노무 지시,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 교직원 대상 성희롱 행위를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성희롱]

처분 [정직 2월]

사례 19

교감 A는

-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적 발언, 신고인에 대한 위협적 발언을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경고]

사례 20

교장 A는

- 특정 교사에게 “선생님은 말귀를 못알아 듣는다”, “그 나이 먹도록 감정 조절도 못하나” 라는 등 인격 모욕 발언을 한 사실 확인,
- 급식 잔반 처리에 있어 내부결재 없이 부적정하게 처리
- 특정 외부단체만 체육관을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

유형 [비인격적 대우], [법령등 위반]

처분 [주의]

사례 21

교장 A는

- 나이스 결재를 득한 후에도 본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출장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에게 화를 내거나 학교 내 중요 사고 발생 시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고성, 폭언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함

  ("도대체 왜 이러는거야!, 미쳤나봐 ○○들이", "교장 초기에 무섭고 힘들다고 한 그 시절로 가야 하나봐")
- 직원에게 수시로 사적 심부름과 매일 수차례 음료준비를 시켰으며 학생급식용 우유를 장기간에 걸쳐 무단 음용함
- 학교예산으로 본인이 사용할 개인용품을 구입토록 지시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학교 주차장 내 본인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이용함
- 본인이 이수해야 할 원격연수를 대리 응시토록 지시하고, 자신의 귀가편의를 위해 직원에게 조퇴 및 차량동행을 요구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학교 홍보물품을 제작토록 지시하고 일부를 사적용도로 사용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법령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정직3월]

사례 22

교감 A는

- 직무수행 및 지도를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교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특정 교직원을 가까이 하지 말도록 발언함)
- 본인의 질병에 따른 휴식을 이유로 적정한 복무처리 절차 없이 근무지에서 이탈

유형 [비인격적 대우], [법령등위반], [기타]

처분 [경고]

사례 23

원감 A는

- 직원들에게 모욕성 발언, 특정직원에 대한 과도한 질책("○○○을 닮지 마라")
- 특수교육대상 원아 비하 발언, 부당업무 지시
- 성차별적 발언을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경고]

사례 24

교장 A는

- 교직원들에 야, 너 등 특정 몇 명을 제외한 교원, 교직원에게 모두 반말
- 교육청 장학사 ○끼들, 주무관 그 ○끼, 그 ○, 머리○을 부숴버려 등 막말
- 수업시간 상관없이 잦은 인터폰 호출함
- 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제외하고 친목회 구성 운영 강요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주의]

사례 25

원감 A는

- 공개석상 또는 다른 직원 앞에서 고성으로 화를 내거나, 특정직원의 잘못을 과도하게 질책, 직원의 경력 등에 대한 지적, 불필요한 행동, 신체접촉(삿대질, 가슴 찌르기), 타직원에게 특정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경고]

사례 26

교장 A는

- 우월적 지위·권한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불안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경고]

사례 27

팀장 A는

-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잦은 고성 등 과잉 감정표출과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 이미 종료된 업무를 하급직원에게 수차례 반복하여 보고서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등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업무지시를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업무상 불이익], [기타]

처분 [주의]

사례 28

교장 A는

- 근무시간 중에 수시로 큰소리로 찬송가를 틀어놓고 기도한 사실이 있음
-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언성을 높여 교사를 훈계한 사실이 있으며 교실과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 수차례 언성을 높여 학생들을 질책한 사실이 있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경고]

사례 29

교감 A는

- 교무실 내에서 해당 교사에게 막말, 부당한 요구로 크게 소리를 질러 다른 교사들까지 공포심을 느끼게 함
- 특정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 및 인격모독, 언어폭력,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훼손하고 교직원과의 갈등을 야기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성희롱]

처분 [경징계 요구]

사례 30

교장 A는

- 교사에게 "너는 공공의 적이야", "너가 초딩이냐? 경위서 처음 써 보냐?", "계약직이니까 교장이 시키는 건 해야지"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경고]

사례 31

직속기관장 A는

- 30분간 아무런 말없이 소속직원을 책상앞에 세워둠
- "너희들 정신상태가 도대체 뭐야. 지금 장난치냐. 어디서 배웠어. 코앞에서 거짓말하고 말야" 등 소속 직원 대상 인격비하 발언 등을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불문경고]

사례 32

행정실장 A는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상신한 문서를 결재해주지 않거나 결재를 지연
- 직원의 공가 결재 및 관외 전보내신 등과 관련된 문서를 고의적으로 결재하지 않고, 교장 명령에 불응
- 행정실 직원들에게 근무 중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 유튜브에 '좋아요'를 누르도록 이야기하고 개인 구매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함.
- 특정직원에 대하여 '절도를 하였다'고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그 직원이 교장과 친인척 관계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등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감봉 3월(타사안 병합)]

사례 33

원감 A는

- B직원을 전직원 전체회의(협의회) 중 또는 다른 직원 앞에서 고성으로 화를 내거나, B직원의 잘못을 과도하게 질책, 경력 등에 대한 지적,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타 직원에게 B직원을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경고]

사례 34

주무관 A는

- 소속직원에게 지속적·반복적 폭언·모욕, 위협(협박)
  "야! 개○○아! 씨○ 너, ○도 모르면서 꺼져!" 등의 폭언(욕설) 등 모욕적 언행, 인격비하 발언 등을 함
- 다수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킴
- 여성 직원의 뺨을 볼펜으로 툭 때리는 등의 폭행, 불필요한 신체접촉
- 상급자에게 "야! 개○○아! 니가 ○장이야?"라고 폭언하고 멱살을 잡아 3차례 정도 흔든 후 2~3미터 가량 끌고 가는 등 비하하는 언행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해임(성사안 등 타사안 병합)]

사례 35

행정실장 A는

- 소속직원과의 업무협의 대화 시 고성을 동반하고, 업무협의 중 결재판이나 손으로 책상을 내려치는 행동, 소속직원과 업무용 메시지 대화 중 업무능력을 폄하하는 발언을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경고]

사례 36

교사 A는

- 후배교사에게 인격비하 및 모욕성·협박성 발언을 함
  ("앞으로 인생 힘들게 될 거다.", "~ 요즘 것들은 감사할 줄을 몰라.",
  "당신 수업 똑바로 해라.", "○○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
- 정당한 이유없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업무협의 시 특정인을 배제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처분 [경고]

사례 37

교육공무직 A는

- 소속직원에게 "미친○"이라 모욕적 언행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견책]

나 ▸ 공공분야 ****

사례 1

실장 A는

- A가 교육중인 전공의들을 상대로 "너는 평생 지방대 출신이다"라고 하고, 평소에도 전공의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 성적 언동을 반복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정직 3월] 직원 상대 사례 전파 및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2

직원 A는

- 청사관리원에게 청사 출입일지를 집어 던지는 행위, 그 행위로 인해 커피가 쏟아져 청사관리원 옷에 얼룩이 발생하게 하는 등 민원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언과 폭력 행위를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징계절차 진행 중(징계위원회 경징계 요구)]

사례 3

의사 A는

- 간호사들을 상대로 수술실에서 수술기구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맘에 들지 않으면 짜증을 내거나 기구를 던지고, 수술 가운이나 장갑을 지정된 적출물 통이 아닌 바닥에 버리고 갔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정직 2월] 재임용불가 통보

사례 4

선임직원 A는

- 하급 직원을 상대로 "야", "저기야" 등의 반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선약이 있다고 했음에도 문자, 전화를 통해 A와의 저녁식사에 참석하도록 요구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경징계] 타 기관 전출

사례 5

직원 A는

- 공무직 직원을 상대로 업무용 가방 관리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어 때릴듯한 행동을 하고, "니가 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니가 하는 일이 뭐 있는데?"라고 하는 등의 폭력적인 언행을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정직 1월]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6

직원 A는

- 방호관을 상대로 ○○청사 로비에서 안면인식기가 여러 차례 인식되지 않자 통과를 요구하며 고성과 신체접촉을 가하고, 옆 스윙게이트로 강제 출입을 시도하였으나 출입이 불가하자 소지한 가방, 옷, 신분증을 로비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주의(직원 A와 방호관은 화해)]

사례 7

과장 A는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직원 B에게 "다른 직원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데... 너에 대해 이기적이다는 말이 많다.", "과를 위해서 네가 손해를 볼 줄 알아야지."라고 하고, 직원 C에게 "사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등의 발언을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훈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사례 8

과장 A는

- 회의중 직원 B에게 "당신처럼 일 못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일 못하면 눈치라도 있지.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는 당신하고 일 못하니깐 다른 곳으로 꺼져라"라고 하고,
- 직원 C에게 "너는 손가락이 없어서 전화를 못하냐? ○○같은 놈.", "왜 안 나가냐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며 C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이야기 해, 그건 됐고"라고 무시를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해임]

사례 9

과장 A는

- 기간제 직원들에게 계약해지 통보 시 "계약 기간이 짧은 것을 알면서 무슨 생각으로 들어왔냐?"고 하고, 결재 시 직원들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언행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화를 내었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강등]

사례 10

팀장 A는

- 직원에게 "너는 꼭 먹을 때만 있더라."라는 등 수시로 인격 비하적인 발언을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훈계]

사례 11

계장 A는

- 직원에게 "시키는 일이나 해", "일도 못 하는 게"라고 하거나 손짓으로 직원을 부르고,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에게 A의 업무를 전가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업무상 불이익]

처분 [감봉 2월] 타 부서로 전보 조치

사례 12

계장 A는

- 직원들을 상대로 "정신 상태가 썩었다.", "나이 들어 보이게 옷을 입는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웃음소리를 지적하기도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전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사례 13

과장 A는

- 직원을 상대로 퇴근 시간 이후 및 주말에 수시로 전화로 업무를 지시하고
- 결재 시 "잔머리 굴리지 마라", "건방 떨지 마라"고 하거나, 임신한 여직원에게 "배불뚝이", 정시 퇴근하는 직원에게 "땡순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음

유형 [업무상 불이익], [비인격적 대우]

처분 [감봉 3월]

사례 14

팀장 A는

- 직원을 상대로 회의중 A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자 큰소리로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말대로 안 할 것이면 빠져"라고 발언을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경고] 간부 대상 사례 전파

사례 15

기관장 A는

- 직원을 상대로 회식중 "쓸모도 없는 네가 왜 여기 있는데.."라고 하고,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어깨 등을 두세 차례 만지는 등 신체 일부를 불필요하게 접촉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성추행]

처분 [경징계] A에게 갑질 관련 재발방지 교육 실시

사례 16

선임직원 A는

- 직원을 상대로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다니려고 하느냐? "라는 등 수차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경고] 전직원 대상 사례 전파

사례 17

과장 A등 3인은

- 직원을 상대로 지시 및 결재 시 "생긴대로 논다", "꺼져"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전보] 간부 및 전직원 대상으로 갑질근절 교육 실시

사례 18

부서장 A는

- 직원을 상대로 보고서에 오·탈자가 많다고 지적하던 중 A4용지와 볼펜을 회의용 탁자 위에 집어 던지고 인상을 쓰면서 "야 너 ○○ ○같네 한번 써봐" 등의 언행을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주의] 가해자·피해자 분리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조치

사례 19

과장 A는

- 팀원을 상대로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연가 일정을 변경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끼야 ○○끼야" 라고 욕설 및 폭행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불문경고] 가해자 인사조치

사례 20

부서장 A는

- 직원을 상대로 업무지시를 하면서 반말을 사용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폭언을 하고,
-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회식을 퇴근한 직원에게도 연락하여 참석하게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정직 2월] 전직원 갑질근절 교육 실시, 관련 사례 전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설문 조사·모니터링 추진

사례 21

팀장 A는

- 여직원을 상대로 "나랑 사귀는 것 어때?", "여자는 성형은 기본이지. 어디 했냐?"라는 등 발언을 하고 전화로도 같은 발언을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처분 [정직 1월] 가해자 교육 및 피해자 상담 조치

사례 22

주방장 A는

- 취사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조리업무를 하면서 손, 국자, 주걱 등으로 수차례 폭행, 추행하고 폭언을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해임]

사례 23

과장 A는

- 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능력없다", "그 따위로 하지 말아라" 등의 발언을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감봉 1월]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24

팀장 A는

- 직원에게 엑셀작업 등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끼야, 나이 든 직원을 선발 안 해야 했다."라는 등으로 발언하고,
- 담당직원에게 근무평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견책] 가해자 인사조치, 피해자 사후 관리 실시

5 기관 이기주의

[기관 이기주의] 유형의 판단 기준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 **[부당한 부담전가]**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 계약 외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됨
- **[불공정 특약조항]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발주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약 조건을 부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
- **[특정 사업자 지원]**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입찰조건을 설정하거나,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됨

예시

- 발주기관이 공사 중 발굴된 문화재 처리비용을 미지급하여 시공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예산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을 시공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
- 발주기관과 계약 시 노무비 삭감, 물가 미반영, 안전관리비 미지급 등 시공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 인·허가, 민원해결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절차 및 민원해결에 관한 비용을 계약 상대자가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필요한 건설기술자 배치 외 인건비 증액 없이 운영요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자격을 해당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법인으로 제한하여 특정사업자가 낙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특정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여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행위

가 ▸ 공공분야 ****

사례 1

팀장 A는

- 회사의 협업공간을 구축하면서 상주인력 인건비 등 운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수행기관들을 상대로 협약상 근거 없이 수행기관의 직원들을 주 1회 협업공간에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요구하였음

유형 [기관 이기주의]

처분 [견책]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2

팀장 A는

-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워크숍 개최 비용을 사업수행 주관기관에 전가하였음

유형 [기관 이기주의]

처분 [견책] 가해자 인사조치, 피해자 사후 관리 실시

사례 3

부장 A는

- 시공사 직원에게 기획공연의 관람객 유치를 위해 최소 4매 이상의 티켓 판매를 하도록 요구하는 메일을 송부하였음

유형 [기관 이기주의]

처분 [구두경고]

사례 4

과장 A는

- 용역업체에 용역과 관련 없는 벽걸이형 TV 설치 장비구매, 용역 보고회 기념품 준비, 사무실 이전 시 칸막이 공사비용을 요구하고, 용역업체 파견직원에게 택배 심부름, 집기류 이동 등 과업범위 외 업무를 지시하였음

유형 [기관 이기주의]

처분 [경징계]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6 업무 불이익

[업무 불이익] 유형의 판단 기준

- **[판단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의 여부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하급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휴가기간・심야 등 사회통념상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에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됨
- **[부당한 업무배제 등]**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하급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업무배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예시

- 상급자가 하급자의 휴가 기간에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하급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여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 산하기관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면서 익일 아침에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급자가 퇴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급자 또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퇴근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상급자가 특정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임의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해당 직원과 어울리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위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 부담을 주는 행위(수천 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 방학 때 학교 공사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행정실 직원에게 방학 기간 중 연가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유치원 교실 환경 구성을 위해 시간외 근무 사유에 해당하는 초과근무를 신청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초과근무를 허가하지 않고,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 업무에 지장이 없음에도 학기 중 행정실 직원의 연가 사용을 제한하며, 방학 때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출장여비 예산이 있음에도 출장(신임지 출장 등) 여비를 지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가 ▸ 교육분야 ****

사례 1

교장A는

- 교육감 표창 추천대상자인 교사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개인적 감정으로 표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행함

유형 [업무 불이익]

처분 [경고]

사례 2

교장 A는

- 업무시간 중 교직원에게 운동을 강요하고 퇴근 중인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로 오도록 압박하고, 회의·운동을 이유로 교사의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게 함
- 업무 수행중임에도 수시로 대면결재 및 보고 강요와 교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잦은 회의소집 및 독단적 의사결정
- 교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출 강요
- 교직원에게 폭언·모욕, 비난 등 인격 모독 발언, 성희롱 및 외모 평가 발언, 차별적 발언 등

유형 [업무 불이익],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처분 [중징계]

사례 3

교사 A는

- 후배 교사에게 여러 직원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인격적 언행과 부당한 행동을 하고 사전 협의 없이 주말에 학교행사에 참여시킴

유형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처분 [행정처분]

사례 4

교장A는

- 친목 도모를 위한 교직원 워크숍에 사비 요구 및 강제 참여를 명령, 저경력교사에게 선택 사항인 각종 연수에 강제로 참여하게 함
- 다수의 교사에게 수차례 폭언(고성, 교권 침해 등) 및 특정 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
- 평소 평교사 및 부장교사들에게 반말을 사용하며 하대하고,
- 사적인 사유로 부장교사에게 자가용으로 마중 및 배웅함
- 교사들과의 식사자리에서 교사가 식사비를 결제하게 함

유형 [기타],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처분 [주의]

나 ▸ 공공분야 ****

사례 1

간호과장 A는

- 간호사를 상대로 A가 담당하는 진료일정 관리와 교육행정 등 업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사적인 금품을 수수하고,
- 퇴근한 간호사들에게 “과장보다 먼저 퇴근을 하느냐”라며 다시 근무지로 복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 평소 소속 부서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자주 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업무 불이익], [비인격적 대우]

처분 [파면] 직원 상대 사례 전파 *금품수수에 대해 과태료 처분 : 40만원

사례 2

계장 A는

- 업무 분장 시 당초 2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특정 직원 1명에게 편중시키고,
- 회식 중 직원의 발언이 맘에 안 든다고 해당 직원의 뺨을 때렸으며, 평상시에도 업무 이외의 사유로 직원들에게 핀잔 등 폭언을 하였음

유형 [업무 불이익], [비인격적 대우]

처분 [감봉 3월]

사례 3

교수 A는

- 학생을 상대로 "머○리 같은 놈", "(지각학생에게) 시간 개념이 없는 놈은 내 수업을 들을 자격이 없으니 나가" 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 국가근로장학생을 상대로 근로시간 이후인 야간에 모의고사 답안 채점을 지시하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음

유형 [업무 불이익],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견책] 교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4

팀장 A는

- 팀원을 상대로 휴가 기간 및 퇴근 시간 이후에 휴대폰을 통해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고,
- 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회식을 통보하며 팀원들을 참석하게 하였음

유형 [업무 불이익], [기타]

처분 [훈계] 갑질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사조치(전보)

사례 5

소장 A는

- 직원을 상대로 A자녀의 등·하교, A의 개인적 병원방문을 위한 운전을 시키는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지시하고,
- 특정 직원의 잘못에 대해 부서 전체나 직급 전체를 불러 질책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 모욕적 언행, 인격비하 발언을 하였으며,
- 잦은 업무 분장 변경으로 직원들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직원의 업무상 필수교육 신청을 제한하였음

유형 [업무 불이익],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처분 [징계위원회 회부(징계절차 중)]

사례 6

과장 A는

- 직원을 상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당직자 등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요구하고,
- 직원에게 업무미흡 등을 이유로 1시간 가량 질책하면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시간 외 SNS 등을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수차례 하였음

유형 [업무 불이익],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처분 [정직 3월] 인사 조치

7 부당한 민원 응대

[부당한 민원 응대] 유형의 판단 기준

- **[판단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 **[민원접수 거부 등]**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취하를 유도하여서는 아니됨
- **[고의적 처리지연]**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제기된 민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떠넘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예시

- 특정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된 민원을 취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 전화번호 오류 등 쉽게 정정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고의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면서 늑장 처리하는 행위
- 처리하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관련성이 희박한 다른 직원·부서·기관 등에 민원서류를 떠넘겨서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끼친 행위

가 ▶ 공공분야 ****

사례 1

팀장 A는

▶ 금품을 초과지급 받은 고객이 당일 과지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였음에도 과지급금 회수처리에 관한 결정을 미루어 고객으로 하여금 재방문하게 하였음

유형 [부당한 민원응대]

처분 [주의] 초과지급금 처리 시 금전사고 처리기준을 준수하고 고객불만 최소화 방안 마련

8 기타

[기타] 유형의 판단 기준

- **[판단 기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 **[따돌림 등 차별행위]**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특정인을 차별하거나 따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모임참여 강요]**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식 등 모임에 참여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신고 방해]**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직원 등이 갑질행위 등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철회하도록 회유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예시

- 모든 직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지급하면서 특정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비품을 주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매시간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사무 공간 출입을 금지시키는 행위
- 아무런 이유 없이 인사를 하여도 무시하고 말을 걸어도 응답이 없는 행위, 보고한 업무에 답이 없고 부서의 회식 등에 부르지 않는 행위, 다른 직원에게 "저 사람 도움 받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는 행위
- 상급자가 하급자 또는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갑작스러운 회식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행위
-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가해자 또는 상급자가 피해자(갑질 피해, 성희롱 피해 등)에게 신고하지 못하게 회유・협박하는 행위
-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고 이를 외부로 알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 상급자가 조직 내 비리신고를 방해하는 행위, 피해자와 조력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하는 행위
- 관리자 등이 교직원 본인 의사에 반한 회식, 행사 등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행위
- 방학 전 학교장의 압력으로 끌려가다시피 하는 직원 친목회 여행 참여를 강요한 행위
- 근무시간 중 직원 체육(배구), 친목회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승진 또는 근평 등의 발언을 하며 모임 참여를 강요한 행위

가 ▸ 교육분야 ****

사례 1

교장A는

- 단체티 구입, 농구부 유니폼 구매, 교재·교구선정, 현장체험 학습활동 지역 선정 등의 결정을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민주적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함

유형 [기타]

처분 [경징계]

사례 2

사립학교 이사장A 및 교장B는

- 관리자의 권한을 남용해 수시로 교원들의 인력을 부당하게 동원하고 노래방 참석을 묵시적으로 강요

유형 [기타]

처분 [중징계]

사례 3

사립학교 이사장 A는

- 학생교육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도자기를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교원들의 인력을 부당하게 동원함

유형 [기타], [사적이익 요구]

처분 [경고]

사례 4

부서장 A는

- 소속 부서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결재과정에서 20~30분간 세워 놓고 지적을 하거나, 과다하게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괴롭힘을 가함

유형 [기타]

처분 [감봉 6월] 전보조치

사례 5

교장 A는

- 교사에게 민원취하 요구를 하여 자율성이 보장된 행위 제한을 강요

유형 [기타]

처분 [경고]

사례 6

교장 A는

- 교원 대상 부적절한 발언, 감사사항에 대한 회유, 압박

유형 [기타],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경고]

사례 7

교장 A는

- 전체 교직원을 대상 학교친목회 참여의 지속적 강요

유형 [기타]

처분 [주의]

사례 8

교장 A는

- 교사 간 다툼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서, 모든 교사들에게 공개사과 하게 하였으며, 경위서 작성 요구 및 교사 비정기전보 신청을 목적으로 학교장 경고를 여러 차례 과도하게 처분함
- 또한, 교장 본인은 근무지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음

유형 [법령 등 위반], [기타]

처분 [정직 3월]

나 ▸ 공공분야 ****

사례 1

교수 A는

- 학생들을 상대로 단체 SNS를 이용하여 학생들 편 가르기를 하고 교수와 학생 간 호칭을 아버지와 아들(딸)로 호칭하도록 하였음

유형 [기타]

처분 [감봉 3월] 교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2

수간호사 A는

- 간호사들을 상대로 특정 간호사와 비교하는 발언을 하고, 평소 간호사들을 다그치면서 때리기도 하였으며,
- "○○간호사를 태우라"(영혼을 태울 정도로 괴롭힌다)는 등의 말을 하고, 승진에 불이익이 있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감봉 2월]

사례 3

직원 A는

- 공단의 사업 대상자를 상대로 언어폭력 및 비하 발언을 하고, 타 종교를 강요하였으며,
- 민감한 정보인 대상자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견책]

사례 4

팀장 A는

- 직원을 상대로 결재중 업무가 미숙하다는 사유로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 초과근무 사유에 해당됨에도 초과근무 결재를 상신하지 못하게 하거나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하지 않았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감봉]

사례 5

팀장 A는

- 직원들과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 특정직원이 단체알림방에 출근 시 ○○IC에서 탑승하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직원에게 ○○IC를 경유하지 말라고 하였음

유형 [기타]

처분 [주의] 정기감사 시 갑질 행위 점검 의무화

사례 6

팀장 A는

- 팀원들을 상대로 2개월간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만들어 A의 결재를 받을 때마다 건당 100원을 모금하게 하고, 이를 거절하면 결재를 해주지 않음

유형 [기타]

처분 [감봉 3월] 임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공유

사례 7

팀장 A는

- 특정 팀원을 상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무슨 연가를 가겠다는 거냐"며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결재 안하면 못 가는 거지"라고 말하며 팀원들의 연가 사용에 부담을 줌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주의]

사례 8

부서장 A는

- 여직원을 상대로 회식중 함께 춤(일명 부르스)을 같이 추자고 하거나, 남직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한 후 그 대금을 부담하게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감봉 1월] 인사발령

사례 9

과장 A는

- 직원을 상대로 주말마다 교회와 그 주위를 청소하도록 하는 등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지시하였음

유형 [기타]

처분 [근신 5일]

사례 10

과장 A는

- 청소담당 공무직 근로자가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순번을 지정하여 휴게실 청소를 하게 하고,
- 직원들을 상대로 평소 외모·신체 관련 지적, 비하 발언 등을 수차례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기타]

처분 [정직 2월] 인사발령

사례 11

A관서에서는

- 관행적으로 직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과장의 점심식사에 동석을 강요함

유형 [기타]

처분 전직원 갑질 근절 교육실시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사례집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부록

- 갑질관련 쟁점사항 및 참고자료
- 국가(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
- 경기도교육청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부록

1 갑질관련 쟁점사항 및 참고자료

부당한 업무지시와 정당한 직무명령

-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정당한 직무명령에 대해서는 갑질로 판단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

참고자료 1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19. 2.) 중 괴롭힘 불인정 사례들에 대한 내용**

사례1)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부서의 팀장이 부서원의 업무에 대해 독려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존재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업무상 부서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례2) 영업소의 실적부진을 이유로 하여 평정자가 영업소 매니저에게 근무평정에서 상위등급 이하의 평정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이는 평정자의 정당한 업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불합리한 평가 또는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입장에서 괴로운 심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는 볼 수 없음

참고자료 2

- **경기도교육청 갑질사례 중**

  새로 부임한 상급자에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상호 간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인 업무 불이익이나 업무방해, 권한의 일탈·남용, 부당지시, 인격적 모멸감에 이를만한 비인격적 언행 등의 사실관계가 없다면 이를 갑질로 볼 수 없음

비인격적 대우의 여부

- 인격적 대우(언행)을 행사하는 행위는 사실관계만 인정되면 적법한 직무명령 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갑질행위로 인정**가능

- 다만 비인격적 언행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 막연히 관리자(상급자)와의 소통부족 등으로 인한 불만 등 본인이 느끼는 감정상 느낌이 아니라 제3자 등 객관적 입장에서도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를만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이 있어야 함
- 직원 간 회의 시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 통상적인 수준의 갈등이나 본인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갑질로 단정할 수 없음

통일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

- 중앙 관계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법령이나 지침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관 간 해석상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당장 현실적인 개선기준 마련이 어려운 경우,

- 기관 내 결정사항에 있어 준수해야 할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그 행태가 상당히 비민주적이라고 볼만한 외형적 내용 등 그 결정에 있어 위법·부당에 이를만한 내용이 없다면 기관의 결정사항에 대해 무조건 갑질이라고 볼 수 없음

  ⇨ 기관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갈등사항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국가(지방)공무원법」

-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제56조, 「지방공무원법」제48조)
- **(친절 · 공정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제59조, 「지방공무원법」제51조)
-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제61조, 「지방공무원법」제5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의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제63조, 「지방공무원법」제5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 **(친절 · 공정한 업무 처리)**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4조)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의3)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의2)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 **(교육)**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6조의3)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93조)

- **(벌칙)** ① 제76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

- **(과태료)** (116조)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 **(정부의 책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제4조제1항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제37조제1항제2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카.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나. 직권 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거.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거.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4조 관련)】

비위 유형 \ 수수 행위 \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 · 정직 · 강등	강등 · 해임 · 파면	해임 · 파면	파면
	능 동	정직 · 강등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 · 강등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능 동	강등 · 해임 · 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 · 해임 · 파면	파면		
	능 동	해임 · 파면	파면		

3 관련 조례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20.] [경기도조례 제6987호, 2021. 5. 2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교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하 “기관”이라 한다)과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도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3. “교직원”이란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관과 학교의 교직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2. 욕설, 폭언 등으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대한 평가, 보상, 승진,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6. 악의적으로 소문 등을 통하여 평판을 저해하는 행위
7.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제4조(교육감 및 교직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통하여 직장 내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진방향 및 목표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연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홍보 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원회 설치) ① 센터에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① 교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전자·비전자 문서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자 이름, 주소, 연락처(변호사가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를 신고자로 본다)
2.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4.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태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의 빈도 등에 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제9조(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명령,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가 성과평가,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조사 실시 과정에서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조사 내용 등을 피해자나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감 및 적용 대상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가해자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지 변경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령 고지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안내
3.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항
4. 가해자 조치에 대한 사항
5.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위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를 조직문화 조성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허위신고 및 신고보복 방지) 교육감은 허위신고를 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를 한 경우 징계, 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987호,2021.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렴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 발행일 : 2021. 12.
- 발행인 : 경기도교육감
- 발행자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편집디자인: 피피디자인(T.031-247-2227)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사례집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